

의안번호	제 486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4월 일 (제 289 회)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0년 4월 6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6
----------	-----

제출연월일 : 2010년 4월 6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도금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 약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도금고 약정기간을 확대 조정하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 지정방법 추가 신설 (안 제4조제1항제3호)
 - 도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 도금고 약정기간 확대 (안 제5조)
 - 2년 → 3년 (1년)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기능 조정 (안 제7조제1항·제2항)
 - 심의 → 심의·평가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 (안 제7조제3항)
 - 9명 이내 → 9명 이상 12명 이하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 신설 (안 제7조제5항)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금고지정 금융기관 지정통지 후 약정서 체결기간 연장 (안 제9조제2항)
 - 10일 이내 → 20일 이내 (10일 연장)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금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충청북도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약정”이란 도지사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6.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7.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8. “기금”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금고지정)”을 “(금고지정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도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 ②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금고 지정 또는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정기준)”을 “(금고지정 평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제7조제1항 중 “심의·의결”을 “심의·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여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의결”을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로 하여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포함 과반수로 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

3. 충청북도 소속 관계공무원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에 배포하거나 열람토록 할 수 있다”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금고약정 기간은 종전 조례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금고 -----</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금고”라 함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p> <p>② “경쟁방법”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p> <p>③ “수의방법”이라 함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p> <p>④ “금고지정”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충청북도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p> <p>⑤ “금고약정”이라 함은 도지사 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금고”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p> <p>2.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p> <p>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p> <p>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충청북도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p> <p>5. “금고약정”이란 도지사 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p> <p>6.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p> <p>7.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p>

현행	개정안
	<p>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p> <p>8. “기금”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p>
<p>제4조(금고지정) ①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p> <p>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p> <p>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p> <p>〈신설〉</p> <p>②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p>	<p>제4조 (금고지정 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p> <p>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p> <p>3. 도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p> <p>②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금고 지정 또는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p>
<p>제5조(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p>	<p>제5조(약정기간) ----- ----- 3년 ----- ----- -</p>
<p>제6조(지정기준)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p>	<p>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구조의 안정성</p> <p>2. 충청북도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p> <p>3. 주민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기여도</p> <p>4. 금고업무 관리능력</p> <p>5. 충청북도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p>	<p>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p> <p>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p> <p>4. (현행과 같음)</p> <p>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추진능력</p>
<p>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① 도지사는 금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u>심의·의결</u>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u>심의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p> <p>② <u>심의위원회</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u>심의</u>한다.</p> <p>1. <u>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u></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③ <u>심의위원회</u>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1. <u>충청북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u></p> <p>2. (생략)</p> <p>3. <u>충청북도 소속 관계공무원 2인</u></p> <p>④ (생략)</p> <p><신설></p> <p>⑤ <u>심의결과</u>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p> <p>⑥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u>심의위원회</u>에서 <u>금고지정방식</u>을 <u>심의·의결</u>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① ----- ----- <u>심의·평가</u> ----- ----- -----</p> <p>② <u>심의위원회</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평가</u>한다.</p> <p>1. <u>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u></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③ <u>심의위원회</u>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포함 과반수로 한다.</p> <p>1. <u>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u></p> <p>2. (현행과 같음)</p> <p>3. <u>충청북도 소속 관계공무원</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심의위원회</u>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 ----- <u>심의위원회</u> ----- -----</p> <p>⑦ ----- ----- <u>금고지정 방법</u>을 <u>심의</u> -----</p>
<p>제8조(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금고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p>	<p>제8조(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p>

현 행	개 정 안
<p>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만료 최소 3월전까지 도보 등에 공고 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 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배포하거나 열람토록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 ----- ----- --- ② ----- ----- -----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금고 약정) ① (생략)</p> <p>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u>10일</u>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제9조(금고 약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20일</u>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77조 (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

다.

②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7.5.11>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 244호]
(2009. 6. 10. 제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 칙

① 목 적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②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③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④ 금고의 수

- 일반회계 : **1금고 지정(단일금고)**
- 특별회계 : **1금고 지정** 또는 특별회계별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 기금회계 : **1금고 지정** 또는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 A(특별·기금회계)- 갑은행, B(특별·기금회계)- 을은행, C(특별·기금회계)- 병은행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⑤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① 개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②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 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3.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5)
 -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15)
 -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10)
 -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5)
- <별 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예시 ① 참조)
 -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5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

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15)	6. 기타사항(15) - 항목 가. 000(5) 나. 000(5) - 세부항목 다. 000(5)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7점)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1순위 6.0점, 2순위 5.0점, 최저순위 3.6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7점) (BIS비율 10% 이상인 경우 만점처리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1순위 6.0점, 2순위 5.5점, 최저순위 3.6점)

(예시③) 항목 6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0) - BIS 자기자본비율(7) - 무수익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5) - BIS 자기자본비율(9) - 추가배점 - 무수익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 대손충당금적립율(3) - 항목추가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급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급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 ※ 추가배점 불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5점)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5)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9점)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9) - 추가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5)
4. 금고업무 관리능력(1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	4. 금고업무 관리능력(1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5)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5)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5)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5)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②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③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관련 유의사항

①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

○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 이 경우,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 출연 등은 약정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등 금고지정과 상호 의존관계가 있어야 됨

—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금융기관인 금고에서 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처리

③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4. 금고의 지정절차

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

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④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①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②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①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②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7. 부 칙

- 이 예규는 200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